

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9. 8.

하동군의회 의장 강 회 순

1. **조례명:**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**제안이유**

○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련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가. 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 및 사전심의 절차 강화(안 제5조제5호·제6

호)

나. 재산등록 및 신고 의무 규정 신설(안 제5조제9호)

다. 겸직신고 대상이 되는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(안 제6조제2항)

라. 겸직신고 대상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의 확인 절차 명확화(안 제6조제3항)

마. 겸직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대조·검증 및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구체화(안 제6조제5항)

바. 겸직신고 공개사항의 범위를 구체화(안 제6조제7항)

사.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신고 현황에 대한 연 1회 점검 규정을 신설(안 제8조제3항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
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
바란다)

3) e-mail: uu102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: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**남용하여**”를 “**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**”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특히 군이 의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,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의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.

제5조제6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7호,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9.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·단체 및 기관·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대표,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(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)의 위원을 말한다.

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, 기관·단체 등의 대표자·종사자 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하며,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직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의장은 선거공보,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, 각종 게시자료,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검직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·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,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의원에게 검직기관·단체의 정관, 소명서, 그 밖의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검직의원 명단(성명, 소속정당, 지역구), 검직기관명(소재지 포함), 검직직위, 검직 관련 지분율·주식보유율·자본금,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검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동군의회 의원 겸직(변경)신고서									
소속정당				선거구 구분	지 역 구				
성 명	한 글				비례대표				
	한 자			생년월일				남, 여	
겸 직 내 용	기관·단체								
	명								
	직 위				재 직 기 간				
	수행업무								
	내역								
	분야		☐ 농수산 ☐ 상공업 ☐ 건설업 ☐ 서비스업 ☐ 교육 ☐ 전문직 ☐ 기타						
	영리성								
	여부		☐ 영리 ☐ 비영리						
	보수수령								
	여부		☐ 보수 수령 ☐ 보수 미수령						
보수		근로소득		원					
수령액		근로소득 이외		원					
(연간)		소득		원					
주 소		계		원					
				전화번호					
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(겸직 등 금지) 및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(겸직금지 등)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(변경)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(서명 또는 인)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			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윤리실천규범)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윤리실천규범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지위를 <u>남용하여</u>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. <u><후단 신설></u>	5. ----- <u>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</u> -----. <u>특히 군이 의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,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위의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6. <u>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u>

<신 설>

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,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[illegible]

④ (생략)

⑤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 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⑦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는 작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,
기관·단체 등의 대표자·종사자
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하며, 검
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
제2호서식에 따라 검직사실이
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의장은 선거공보, 의원등록
시 이력사항, 각종 게시자료, 수
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검
직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미신고
또는 허위·부정확한 내용이 발
견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명
할 기회를 주고, 소명이 부족한
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의원에
게 검직기관·단체의 정관, 소명
서, 그 밖의 검증을 위한 자료
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. 이 경우 공개되는 현
황은 검직의원 명단(성명, 소속
정당, 지역구), 검직기관명(소재

제8조(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) ① 삭제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지 포함), 겸직직위, 겸직 관련 지분율·주식보유율·자본금,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제8조(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.</u>
--	---